**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1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 “제15조의 3”을 “제15조의 4”로, “제58조의 25”를 “제58조의 26”으로, “제69조의 2”를 “제69조의 3”으로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제58조의 19”를 “제58조의 19 제1호”로 개정한다.

제4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제1항 중 “전조 단서”를 “전조 제1항 단서”로, “동조 각호”를 “동조 제1항 각호”로, “동조 제5호”를 “동항 제5호”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전조 제1호”를 “전조 제1항 제1호”로, “동조 제5호”를 “동항 제5호”로 변경하고, 동조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3.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구매자 또는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 변경한다.

제7조 제1항 중 “혹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를 “,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혹은 제2항 혹은 제6홍”으로 변경한다.

제8조의 표제를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혹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를 “,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6조”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개인이면서, 특정 관계법인(판매업자 또는 역무제사업체 또는 그 임원 혹은 그 영업소 업무를 통괄하는 자,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하, 단지 “사용인”이라고 한다)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하다. 다음 조 제2항, 제15조의 2 제2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서 같다)이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관계법인에서 하고 있는 해당 동일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제8조의 2의 표제를 “(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며, 동항 제1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고, “영업소의 업무를 통괄하는 자,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하, 단지 “ “ 및 “ “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해,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제1항 중 “,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추가하고, 동항 단서 중 “제5조”를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4조”를 “제4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11조 단서 중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동조 제6호로 하며, 동조 제4호 중 “의 매매계약” 밑에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추가하고, “또는 매매계약의”를 “또는”으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조 제5호로 하고, 동조 제3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사.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신청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그 내용

제12조 중 “의 매매계약” 밑에 “또는 해당 역무의 역무제공계약”을 추가하고, “또는 매매계약의”을 “또는”으로 변경한다.

제12조의 3 제1항 중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2조의 4 제1항 중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6항”으로 변경한다.

제12조의 5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특정 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

제12조의 6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판매업자 혹은 해당 역무제공사업자 혹은 그들의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하는 양식의 서면에 의해 고객이 행하는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 신청 또는 해당 판매업자 혹은 해당 역무제공사업자 혹은 그들의 위탁을 받은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고객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행하는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계약 신청(이하, “특정 신청”으로 총칭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 신청에 관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일. 해당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판매하는 상품 또는 특정 권리 또는 해당 역무제공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역무의 분량

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제공계약에 관한 제11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특정 신청에 관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일. 해당 서면의 송부 또는 해당 절차에 따른 정보의 송신이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 신청에 있어서,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이.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있어서,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제13조 제2 항 중 “전항 본문”을 “전항”으로, “통지해야”를 “서면에 기재해야”로 변경하고, “그 다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삭제하고, “해당 판매업자 또는” 밑에 “해당”을 추가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부실 고지 금지)

제13조의 2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와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혹은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제공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3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제공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을 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항 중 “혹은 전조 제1항”을 “, 제12조의 6, 제13조 제1항 혹은 전조”로 변경한다.

제15조의 표제를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혹은 제13조 제1항”을 “, 제12조의 6, 제13조 제1항 혹은 제13조의 2”로 변경하고, 동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1항” 밑에 “또는 제2항”을 추가하며, 동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업무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개인이면서, 그 특정 관계법인에 있어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 2의 표제를 “(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 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해,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매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장 제3절 중 제15조의 3 다음에 다음의 일조를 추가한다.

(통신 판매에 있어서 계약신청 의사표시의 취소)

제15조의 4 특정 신청을 한 자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해당 특정 신청을 받을 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특정 신청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일. 제12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의 표시를 하는 행위 - 해당 표시가 사실이라는 오인

이. 제12조의 6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해당 표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인

삼. 제12조의 6 제2항 제1호에 열거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의 송부 또는 절차에 따른 정보의 송신이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오인

사. 제12조의 6 제2항 제2호에 열거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동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오인

2. 제9조의 3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신청의 의사표시 취소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8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고,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전조 각호”를 “전조 제1항 각호”로, “동조 제5호”를 “동항 제5호”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전조 제1호”를 “전조 제1항 제1호”로, “동조 제5호”를 “동항 제5호”로 변경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3.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구매자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이라고 읽어야 한다.

제20조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통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똔느 해당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제1항 중 “에서 제21조 까지”를 “,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1조”로 변경한다.

제23조의 표제를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에서 제21조까지”를 “,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1조”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개인이면서, 그 특정 관계법인에 있어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 2의 표제를 “(임원 등에 대한 업무 금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를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해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 제1항 중 “,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을 추가하고, 동항 단서 중 “제19조”를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8조“를 “제18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서면” 밑에 “또는 전자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26조 제2항 중 “제15조의 3” 밑에 “, 제15조의 4”를 추가하고, 동조 제5항 중 “다음”을 “다음에 열거하는”으로 변경하며, 동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4조 또는 제5조 또는 제18조 또는 제19조 “를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변경한다.

제33조 제2항 중 “제58조의 21” 밑에 “, 제58조의 26 제1항”을 추가한다.

제36조의 4 제1항 중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6항”으로 변경한다.

제37조 제1항 중 “, 그 자” 밑에 “. 제3항에서 같다”를 추가하고, 동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3.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해당 연쇄판매 계약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해당 연쇄판매 계약의 상대방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을 때, 해당 연쇄판매 계약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 중 “전조”를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으로 변경한다.

제39조의 표제를 “(통괄자 등에 대한 연쇄판매거래의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 중 “제37조”를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6항으로 하며, 동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4. 주무대신은 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및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행하는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통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연쇄판매업자가 개인이면서, 그 특정 관계법인(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 또는 그 임원 또는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4항에서 같다)이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항 및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같다)에게 있어서, 해당 정리를 명하는 범위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통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연쇄판매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 2의 표제를 “(임원에 대한 업무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조 제2항”을 “전조 제2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3항 중 “전조 제3항”을 “전조 제3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4항 중 “전조 제3항”을 “전 각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4. 주무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연쇄판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통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연쇄판매업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연쇄판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0조 제1항 중 “, 서면” 밑에 “또는 전자기록”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중 “서면” 밑에 “또는 전자기 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42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4.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혹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를 구매하려는 자,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 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역무제공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 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을 때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자 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제2항 중 “전항의”를 “동항의”로 변경한다.

제46조 제1항 중 “제42조”를 “제4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로 변경한다.

제47조의 표제를 “(역무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제42조”를 “제4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다음에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업무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역무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개인이면서, 그 특정 관계법인(역무제공사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그 임원 혹은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에서 같다)가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같다)에 있어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특정 관계법인이 행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 2의 표제를 “(임원 등에 대한 업무 금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게 해당 금지를 명시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특정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8조 제1항 중 “,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중 “및 제58조의 22 제2항” 밑에 “제58조의 26 제1항”을 추가하며, 동조 제3항 중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51조 제1항 중 “및 제58조의 23” 밑에 “55조의 26 제1항”을 추가한다. 제54조의 4 제1항 중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6항”으로 개정한다.

제55조에 아래 2항을 추가한다.

3.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실시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을 때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6조 제1항 중 “전조”를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으로 변경한다.

제57조의 표제를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의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제55조”를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항” 밑에 “또는 제2항”을 추가하고, 동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그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에 관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실시하는 자가 개인이면서, 그 특정 관계법인(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그 임원 또는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에서 같다)이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같다)에게 있어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수행하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리하라고 명할 수 있다.

제57조의 2 표제를 “(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고,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를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게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실시하는 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8조 제1항 중 “,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중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58조의 7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2. 구매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매업자는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의 8 제1 항 중 “전조 단서”를 “전조 제1항 단서”로, “동조 각호”를 “동조 제1항 각호”로, “동조 제5호”를 “동항 제5호”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전조 제1호”를 “전조 제1항 제1호”로, “동조 제5호”를 “동항 제5호”로 변경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3.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매매계약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제58조의 12 제1항 중 “제58조의 5” 밑에 “, 제58조의 6, 제58조의 7 제1항,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8조의 9”를 추가한다.

제58조의 13의 표제를 “(구매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제58조의 5” 밑에 “, 제58조의 6, 제58조의 7 제1항,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8조의 9”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구매업자가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구매업자 또는 그 임원 또는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이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같다)에 있어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구매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 13의 2의 표제를 “(임원 등에 대한 업무 금지 등)”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하며, 동항 각호 중 “60일”을 “1년”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전2항”으로 개정하며,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다음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게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스스로 구매업자로서 해당 명령에 의해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8조의 14 제1항 중 “,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을 추가하고, 동항 단서 중 “제58조의 8”을 “제58조의 8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58조의 7”을 “제58조의 7 제1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서면” 밑에 “또는 전자기 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58조의 19 중 “을 하는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조건에 대해 광고를 할 때”를 “에 관해”로, “해당 상품의 성능 또는 관련 권리 또는 해당 역무의 내용 또는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상당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다”를 “다음에 열거하는”으로 변경하며, 동조에 다음 각호를 추가한다.

일.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광고를 할 때, 해당 상품의 성능 혹은 특정 권리 또는 해당 역무의 내용 또는 해당 상품 혹은 해당 특정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의 역무제공계약 신청철회 혹은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 3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또는 실제보다도 상당히 우수하거나,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이. 특정 신청과 관련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제12조의 6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부실 표시를 하는 행위

삼. 특정 신청에 관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가. 해당 서면의 송부 또는 해당 절차에 따른 정보의 송신이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이 되는 것.

나. 제12조의 6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사.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취소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철회 또는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제공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제15조의 3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제공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

제5장의 3 중 제58조의 25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적격 소비자 단체에 정보 제공)

제58조의 26 소비자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11조의 7 제1항에 규정하는 소비생활협력단체 및 소비생활협력원은 판매자, 역무제공업체, 총괄자, 권유자, 일반연쇄판매업자, 관련상품을 판매하는 자,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 또는 구매업자가 불특정이고 다수의 사람에게 제58조의 18에서 제58조의 24까지 규정하는 행위를 현재 실시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경우, 적격 소비자 단체가 제58조의 18에서 제58조의 24까지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적격 소비자 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적격 소비자 단체는 해당 정보를 제58조의 18에서 제58조의 24까지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권리의 적절한 행사 용도로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9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앞에 표제로서 “(매매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을 붙이고, 동조 제1항 중 “에 있어서, 그 상품의 송부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 경과되는 날(그 날이 그 상품을 송부 받은 자가 판매업자에게 그 상품 인수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되는 날 이후일 때는 그 7일이 경과되는 날)까지, 그 상품을 송부 받은 자가 그 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고, 판매업자가 그 상품을 인수하지 않을 때는”을 “에는”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을 “이 영업을 위해 또는 영업으로서 체결하게 되는”으로 변경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 1조 추가한다.

제59조의 2 판매업자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가장하여 그 매매계약과 관련된 상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1조 제1항 중 “제66조 제4항”을 “제66조 제5항”으로 변경한다.

제64조 제2항 중 “혹은 제3항” 밑에 “, 제4조 제2항(제5조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조 제4항 밑에 “, 제13조 제2항”을 추가하고, “제26조 제5항 제3호”를 “제18조 제2항(제19조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항, 제26조 제5항 제3호”로 변경하고, “제34조 제4항” 밑에 “, 제37조 제3항”을, “금액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밑에, “, 제42조 제4항”을, “제52조 제3항” 밑에 “, 제55조 제3항, 제58조의 7 제2항(제58조의 8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점포 및 그 외 사업소”를 “사무소, 사업소, 기타 사업을 하는 장소”로 변경하고, 동조 제7항 중 “혹은 제2항”을 “에서 제3항까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혹은 제2항”을 “에서 제3항 까지”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및 제3항”을 “부터 제4항까지 규정”으로 변경하며, 동항을 동조 제6항으로하고, 동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3.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 한도 내에서 그 직원에게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사업을 하는 장소에 진입하여, 그 위탁을 받은 업무에 관해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의 4 중 “제108조 및”을 “제107조 제1항(제1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음 조 제1항 제2호에서 같다) 및 제3항, 제108조와”로, “집행관”을 “집행관”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중 “집행소 서기관”으로 변경하며, “직원”과” 밑에 “, 동항 중 “최고재판소 규칙”은 “주무성령”으로”를 추가한다.

제66조의 5 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아래 1호를 추가한다.

이.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6장 중 제69조의 2의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외국집행당국에 정보제공)

제69조의 3 주무대신은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집행하는 외국의 당국(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외국집행당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직무(이 법률에 규정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대해, 그 직무(이 법률에 규정하는 직무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수행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해당 외국집행당국의 직무수행 이외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항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그 대상의 범죄사실이 확인된 후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심판(동항에서 “수사 등”이라고 한다)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주무대신은 외국집행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때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한 정보를 해당 요청과 관련된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일.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 등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정치 범죄일 때, 또는 해당 요청이 정치 범죄에 대해 수사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될 때.

이.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행해졌다고 한 경우, 그 행위가 일본의 법령에 따르면 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삼. 일본이 실시하는 동종의 요청에 따른다는 내용의 요청 국가 보증이 없을 때.

4. 주무대신은 전항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무대신의 확인을, 동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외무대신의 확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제70조 중 “자는”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호 중 “제6조” 밑에 “, 제13조의 2”를 추가하고,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제1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의 표시를 했을 때.

제70조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삼.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제1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5조의 2 제1항 혹은 제2항,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 2 제1항 혹은 제2항, 제39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39조의 2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4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제57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5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제58조의 13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58조의 13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71조 중 “자는”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호 중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37조, 제42조, 제55조, 제58조의 7 또는 제58조의 8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58조의 7 제1항 또는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으로,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조 제2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 중 “동조 제5항”을 “동조 제6항”으로, “자”를 “때.”로 변경한다.

제72조 제1항 중 “자는”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 중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항 제7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고, 동호를 동항 제8호로 하고, 동항 제6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항 제7호로 하고, 동항 제5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항 제6호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제20조”를 “제20조 제1항”으로,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항 제5호로 하고, 동항 제3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사. 제12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에 열거하는 표시를 했을 때.

제73조 중 “자는”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조 제3호 중 “제66조 제4항”을 “제66조 제5항”으로, “자”를 “때.”로 변경하고, 동호를 동조 제4호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제66조 제3항(동조 제5항)”을 “제66조 제4항 (동조 제6항”으로, “동조 제3항”을 “동조 제4항”으로, “자”를 “때.”로 변경하고, 동호를 동조 제3호로 하며, 동조 제1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이. 제66조 제3항 (동조 제6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제74조 제 1항 중 “각 호에서”를 “각 호에”로 변경하고, 동항 제1호 중 “제70조 제2호”를 “제70조 제3호”로 변경하고, 동항 제2호 중 “제70조 제1호”를 “제70조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한다.

(특정 상품 등의 예탁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2조 특정 상품 등의 예탁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

제목 다음에 다음 목차와 장명을 붙인다.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예탁 등 거래

제1절 예탁 등 거래에 관한 규제(제3조-제6조)

제2절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 등(제7조/제8조)

제3장 판매를 수반하는 예탁 등 거래의 금지 등

제1절 권유 등의 금지 등(제9조-제13조)

제2절 계약 체결 등의 금지 등(제14조-제16조)

제3절 판매를 수반하는 예탁 등 거래에 관한 해제 등의 특칙(제17조)

제4장 위반에 대한조치 등(제18조-제25조)

제5장 잡칙(제26조-제31조)

제6장 벌칙(제32조-제38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 “특정 상품 및 시설이용권의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공정하게 하고, 예탁 등 거래계약”을 “예탁 등 거래”로, “을 도모함으로써,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을 “에 관한 규제를 정함과 동시에, 판매를 수반하는 예탁 등 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로 변경한다.

제2조 제1항 중 “예탁 등 거래계약”을 “예탁 등 거래”로, “계약을”을 “거래를”로 변경하고, 동항 제1호 중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 “을 삭제하고, “특정 상품”을 “물품”으로 변경하며, “ “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계약”을 “거래”로 변경하며, 동항 제2호 중 “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음에 열거하는 권리”에, “시설 이용권”을 “특정 권리”로, “계약”을 “거래”로 바꾸고, 동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 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나. 물품의 이용에 관한 권리, 인도 청구권, 그 외 이와 유사한 권리

제2조 제2항 중 “예탁 등 거래계약”을 “예탁 등 거래”로, “특정 상품”을 “물품”으로, “시설 이용권”을 “특정 권리”로, “목적으로 하기 위해”를 “대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삭제하고, “와”를 “및”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 중 “예탁 등 거래계약”을 “예탁 등 거래”로, “의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한”을 “에 대해”로, “목적으로 하기 위해 해당 특정 상품 또는 시설이용권을 구매하게 하는 것에 대한”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에 관한”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4항 중 “예탁 등 거래계약”을 “예탁 등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예탁 등 거래계약”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 장명 및 절명을 붙인다.

제2장 예탁 등 거래

제1절 예탁 등 거래에 관한 규제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으로서(であつて)”를 “으로서(であって)”로 변경하고, “에 대한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의 개요”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 중 “으로서(であつて)”를 “으로서(であって)”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체결한”을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한”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품“을 “물품”으로, “시설이용권“을 “특정 권리“로 변경하며, 동항 제3호 중 “특정 상품 또는 시설 이용권”을 “물품 또는 특정 권리”로, “은(あつては)”을 “은(あっては)”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4호 중 “은(あつては)”을 “은(あっては)”으로 변경하며, 동항 제5호 중 “제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로 변경하며, 동항 제7호중 “상품”을 “물품”으로, “시설이용권”을 “특정 권리”로, “은(あつては)”을 “은(あっては)”으로 변경하고, 동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3. 예탁 등 거래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객 또는 예탁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에 의한 제공은 예탁자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되었을 때 해당 예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앞에 표제로서, “(부당한 권유 등의 금지)”를 붙이고, 동조 제1항 중 “권유자” 밑에 “(이하, “예탁 등 거래업자”라 한다)”를 추가하고, “또는 갱신에 대한”을 “혹은 갱신에 대해”로, “때는”을 “때,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로, “특정 상품 또는 시설 이용권의 구매”를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로, “으로서(であつて)”를 “으로서(であって)”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예탁 등 거래업자 등은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혹은 갱신에 대해 권유를 할 때,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위협하여 당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중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권유자”를 “예탁 등 거래업자”로 변경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 “의해(よつて)”를 “의해(よって)”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조 제1호로하고, 동조 제3호 중 “전2호“를 “전호”로, “으로서(であつて)”를 “으로서(であって)”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조 제2호로 다.

제6조의 표제를 “(서류의 열람 등)”로 변경하고, 동조 중 “예탁 등 거래계약”을 “예탁 등 거래”로, “에 비치하여, 예탁자의 요구에 따라, 열람하게 하지 않으면”을 “마다 비치하지 않으면”으로 변경하고, 동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2. 예탁 등 거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자마다 해당 예탁자가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한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해야 한다.

3. 예탁자는 예탁 등 거래업자에게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류 또는 전항의 장부서류(스스로 체결 또는 갱신한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 등 거래업자는 해당 청구가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의 업무 운영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 명확할 때를 제외하고, 해당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6조 다음에 다음 절명을 붙인다.

제2절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 등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에 표제로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붙이며, 동조 제1항 중 “경과했을 때를 제외하고, 서면”을 “경과할 때까지 동안(예탁자가, 예탁 등 거래업자 등이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임을 알리는 행위를 함에 따라 해당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인을 하거나, 또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위협함으로써 당황하게 하고, 이들에 의해 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탁 등 거래업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해당 예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까지 동안)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자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전항의” 밑에 “규정에 의한”을, “서면” 밑에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추가한다.

제8조 제4항 중 “전3항”을 “전 각항”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있었다(あつた)”를 “있었다(あった)”로, “상품”을 “물품”으로, “시설 이용권을 예탁자에게 취득하게 하기 위해”를 “특정 권리의 관리 종료에 따른 사무 처리”로 개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다음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예탁 등 거래업자는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를 제7조로한다.

제17조 중 “대표자” 밑에 “혹은 관리인”을 추가하고, “관해 전3조의”를 “관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로, “또는 사람에게”를 “에 대해 해당 각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로 변경하고, 동조에 다음 각호를 추가한다.

일. 제32조 - 5억엔 이하의 벌금

이. 제33조 제2호 - 3억엔 이하의 벌금

삼. 제33조 제1호 - 1억엔 이하의 벌금

사. 제34조에서 전조까지 – 각 본조의 벌금형

제17조에 다음 2항을 추가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32조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 기간은 동조의 죄에 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

3.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 제1항의 규정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그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것 외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를 제38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중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로, “자는 2년”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으로, “또는 100만엔”을 “혹은 300만엔”으로, “처한다”를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로 변경하고, 동조 제1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고, 동조 제2호 중 “제7조 제1항”을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1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로, “자”를 “때.”로 변경하며, 동조를 제33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 4조를 추가한다.

제34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일. 제10조 제1항(제1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서 또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이들의 규정을 제1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여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혹은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에 허위기록 또는 기록을 하여 이들을 제출했을 때.

이. 제12조 제2항의 신청서 또는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여기에 첨부할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에 허위기재 또는 기록을 하여 이들을 제출했을 때.

제35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을 병과한다.

일.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 기록이 있는 서면을 교부했을 때.

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혹은 허위 물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제36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 기재가 있는 서류를 갖추었을 때.

이.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장부서류의 작성 혹은 보존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 장부서류를 작성했을 때.

삼.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 또는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절했을 때.

제37조 제12조 제5항의 제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신고를 했을 때,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 2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소비자청 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2를 제31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 장명 및 1조를 추가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일.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항의 확인을 받지 않고 권유 등을 했을 때.

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9조 제1항의 확인 및 제14조 제2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업데이트를 할 때.

삼. 거짓, 그 외 부정수단에 의해 제9조 제1항의 확인 또는 제14조 제2항의 확인을 받았을 때.

제13조를 제30조로 하고, 제1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1조의 2 중 “제2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 혹은 제2항,”을 “제2조 제1항 제2호 “가” 혹은 제2항, 제3조 제3항 또는”으로 변경하고, “혹은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1조 중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전3장”으로 변경하고, 동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 등 거래업자 혹은 권유자에게 보고하게 하고”를 “예탁 등 거래업자 혹은 밀접 관계자에게 그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업무 또는 예탁 등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에 관한 업무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로, “예탁 등 거래업자의 사업소”를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 혹은 밀접관계자의 사업소, 그 외 해당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사업소 혹은 해당 물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장소”로 변경하고, 동조를 제18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7조, 장명 및 1조를 추가한다.

(예탁 등 거래의 정지)

제19조 내각총리대신은 예탁 등 거래업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권유자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에게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예탁 등 거래에 대해 권유를 하거나 혹은 해당 권유를 권유자에게 시키는 것을 정지하거나, 또는 해당 예탁 등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하라고 명하고, 그 외 고객 또는 예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 제3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항의 확인을 받지 않고 권유 등을 하는 행위

삼.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9조 제1항의 확인 및 제14조 제2항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혹은 갱신을 하는 행위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한다.

(업무 금지 등)

제20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 등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예탁 등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직원, 이사, 집행역,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그 외 어떤 명칭을 가진 자인지를 불문하고, 법인에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역,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것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예탁 등 거래업자에게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탁 등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하여 그 자가 가지고 있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에 의한 예탁 등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에게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개시하는 것(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일.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임원(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 및 그 사업소의 업무를 통괄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다음 호 및 동조에서 단지 “사용인”이라고 한다)

이.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가 개인인 경우 – 그 사용인

3. 내각총리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한다.

(특정 관계법인에 있어서 업무 정지 등)

제21조 내각총리대신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탁 등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개인이면서, 특정 관계법인(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그 임원 혹은 그 사용인이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에 대해,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탁 등 거래와 관련된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탁 등 거래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게 있어서, 해당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에게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탁 등 거래와 관련된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스스로 예탁 등 거래업자로서, 해당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에게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해, 예탁 등 거래업자로서 실시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

4. 내각총리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한다.

(송달해야 할 서류)

제22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음 조 제1항 제2호에서 같다) 및 제3항, 제108조와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9조 제1항 중 “집행관”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중 “재판소 서기관”은 “소비자청의 직원”으로, 동항 중 “최고재판소 규칙”은 “내각부령”으로, 동법 제108조 중 “재판장” 및 동법 제109조 중 “재판소”는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한다.

(공시 송달)

제24조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일.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전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삼.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대해, 전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또는 이것에 의해서도 송달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경우

사. 전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발한 후 6월이 경과되어도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을 경우

2. 공시송달은 송달해야 하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교부해야 하는 내용을 소비자청의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실시한다.

3. 공시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개시한 날부터 2주가 경과됨에 따라, 그 효력을 일으킨다.

4.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대해서 한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전항의 기간은 6주간으로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제25조 소비자청의 직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3조 제9호에 규정하는 처분통지 등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서류를 송달하여 실시하기로 한 것에 관한 사무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실시했을 때는 제23조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사항을 해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소비자청의 사용에 관계되는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5장 잡칙

(외국집행당국에 정보제공)

제26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집행하는 외국의 당국(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외국집행당국”이라고 한다)에 대해, 그 직무(이 법률에 규정하는 직무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수행에 공헌한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해당 외국집행당국의 직무수행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다음 항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그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 이 특정된 후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심리(동항에서 “수사 등”이라고 한다)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외국집행당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한 정보를 해당 요청과 관련된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일. 해당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 대상이 되는 범죄가 정치범죄일 때, 또는 해당 요청이 정치범죄에 대해 수사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될 때.

이. 해당 요청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 등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범위에 관한 행위가 일본국내에서 행해졌다고 한 경우, 그 행위가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때.

삼. 일본이 실시하는 동종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내용의 요청국가 보증이 없을 때.

4.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무대신의 확인을, 동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무대신의 확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제9조에 표제로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의 액수 제한)”을 붙여, 동조 제1항 중 “에 있어서”를 “(예탁자가, 예탁 등 거래업자 등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실함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또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위협하여 당황하게 하고, 이들에 의해 해당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등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해당 예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향해(向かつて)”를 “향해(向かって)”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 중 “예탁 등 거래업자는” 밑에 “전항의 규정에 의해”를 추가하고, “특정 상품”을 “물품”으로, “시설이용권”을 “특정권리”로, “의 100분의 10”을 “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기재된 상품”을 “기재된 물품”으로 변경하고, 동조를 제8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 1장 및 장명을 추가한다.

제3장 판매를 수반하는 예탁 등 거래의 금지 등

제1절 권유 등의 금지

(권유 등의 금지)

제9조 예탁 등 거래업자는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관계자(예탁 등 거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 또는 특정권리의 판매를 수행하는 자, 그 외 예탁 등 거래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특정권리에 관한 매매계약(해당 물품 또는 특정권리를 예탁 등 거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 및 해당 물품 또는 특정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종류별로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 혹은 밀접관계자가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가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갱신함으로써 고객의 재산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 미리 내각총리대신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 권유 등(권유 또는 광고,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관계자가 이미 판매한 물품 또는 특정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에 관한 권유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전항의 확인은 1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 경과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전항의 갱신 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확인의 유효기간”이라고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을 때, 종전의 확인은 확인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처분 이 될 때까지 동안에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확인이 갱신되었을 때, 그 확인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확인 또는 그 갱신 시, 고객의 재산상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확인 또는 그 갱신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확인의 신청)

제10조 예탁 등 거래업자는 전조 제1항의 확인(동조 제2항의 확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할 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 상호, 명칭 또는 성명

이. 본점, 지점,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삼.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역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

사.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유 등에 관한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종류

오. 다음 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육. 그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일.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대차대조표

삼. 손익계산서

사.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관,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서류 대신에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 매체를 첨부할 수 있다.

(확인의 심사)

제11조 내각총리대신은 제9조 제1항의 확인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해당 사항이 모두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가 아니면 동항의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일. 신청자(해당 신청에 관한 권유 등을 실시하는 예탁 등 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밀접관계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매매계약(제9조 제1항 후단) 확인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와 관련된 물품 또는 특정권리의 가액

이. 신청자가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각각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서 물품의 예탁을 받는 기간 또는 특정 권리를 관리하는 기간 및 해당 각각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공여되는 재산상의 이익 금액(공여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금전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 및 내용

삼. 신청자가 제9조 제1항의 확인 유효기간 내에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모든 예탁 등 거래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공여하는 재산상의 이익 총액에 대한 예상액

사. 제2호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예탁을 받는 물품 또는 관리하는 특정 권리의 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오. 신청자가 제2호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예탁을 받는 물품 혹은 관리하는 특정 권리의 반환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금전의 급부, 해당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매입 및 고객에게 공여되는 재산상의 이익 지불에 관한 부채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

육.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내각총리대신은 제9조 제1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한다.

(변경의 확인 등)

제12조 제9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예탁 등 거래업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변경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탁 등 거래업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의 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변경 후의 것)”으로 변경한다.

4.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된 해당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9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예탁 등 거래업자는 제1항 단서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내각총리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확인 취소)

제13조 내각총리대신은 제9조 제1항의 확인(전조 제1항의 변경 확인을 받았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같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일. 허위, 그 외 부정수단에 의해 제9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확인에 붙은 조건을 위반했을 때.

삼.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기초가 부족함으로 인해 고객의 재산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2절 계약 체결 등의 금지

(계약 체결 등의 금지)

제14조 예탁 등 거래업자는 제9조 제1항의 확인 및 다음 항의 확인을 받지 않은 종류의 물품 또는 특정권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매자가 되는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자기 또는 밀접관계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물품 또는 특정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관계자가 이미 판매한 물품 또는 특정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제9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예탁 등 거래업자는 동항의 확인을 받은 종류의 물품 혹은 특정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및 해당 물품 또는 특정권리로서 자기 또는 밀접한 관계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혹은 갱신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예탁 등 거래업자 혹은 밀접관계자가 이미 판매한 물품 혹은 특정권리로서 동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혹은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확인의 유효 기간 내에 미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 해당 매매계약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내용이 제9조 제1항의 확인 대상이 된 매매계약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내용(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적합할 것.

이.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의 상황 및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갱신하는 목적에 비추어,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혹은 갱신이 고객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것.

3. 제9조 제1항의 확인 및 전항의 확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이러한 확인을 받지 않고 체결하거나, 혹은 갱신한 예탁 등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내각총리대신은 제2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한다.

(확인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0조의 규정은 전조 제2항의 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권유 등”은 “매매계약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으로, 동항 제5호 중 “제4호”는 “제3호”로 변경한다.

2.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된 해당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때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확인 취소)

제16조 내각총리대신은 제14조 제2항의 확인을 한 매매계약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일. 허위, 그 외 부정 수단에 의해 제14조 제2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제9조 제1항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확인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혹은 갱신에 대해 제14조 제2항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 동항의 확인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판매를 수반하는 예탁 등 거래에 관한 해제 등의 특별규칙

제17조 예탁자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를 행한 경우에는 현재 효력을 가진 해당 예탁 등 거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 또는 특정 권리와 관련된 매매계약(제14조 제2 항의 확인을 받은 것 중 동항의 확인을 받은 날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예탁자가 해당 해제를 했을 때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예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관계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청구를 할 수 없다.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물품인도 또는 특정권리의 이전이 이미 되었을 때, 그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해당 물품 또는 특정 권리를 판매한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관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관계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이미 해당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인도된 물품이 사용되거나 또는 이전된 특정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에도 예탁자에 대해 해당 물품의 사용에 의해 얻어진 이익 또는 해당 특정권리의 행사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전, 기타 금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5.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예탁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4장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제3조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9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 “제92조”를 “제93조”로, “제93조-제99조”를 “제94 -제100조”로 변경한다.

제99조 중 “다음의” 밑에 “각 호의”를 추가하고, 동조 제9호 중 “제91조 제2항”을 “제92조 제2항”으로 변경하며, 동호를 동조 제10호로 하고, 동조 제8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구. 제9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동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한 자

제99조를 제100조로 한다.

제98조 중 “다음의” 밑에 “각 호의”를 추가하고, 동조를 제99조로 한다.

제97조 중 “다음의” 밑에 “각 호의”를 추가하고, 동조를 제98조로 한다.

제96조 제1항 중 “전3조”를 “제94조, 제95조 제1항 또는 전조”로 변경하고, 동조를 제97조로 한다.

제95조 중 “다음의” 밑에 “각 호의”를 추가하고, “자는”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1호 중 “자”를 “때.”로 변경하고, 동조 제2호 중 “한 자”를 “했을 때.”로 변경하며, 동조를 제96조로 한다.

제94조를 삭제하고, 제93조를 제94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제95조 허위, 기타 부정 수단에 의해 특정 인정, 제69조 제2항의 유효기간 갱신 또는 제71조 제3항 혹은 제72조 제3항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회복 관계업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장 제4절 중 제91조를 제93조로한다.

제91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를 제92조로 하며, 제90조 다음에 다음의 표제 및 1조를 추가한다.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에 협력 등)

제91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가 피해회복 재판절차를 적절히 추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에서,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에게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 또는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에 근거하는 처분에 관해 작성한 서류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공을 받은 특정 적격 소비자 단체는 해당 서류를 해당 피해회복 재판절차의 용도로 제공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 제1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제6조 제4항” 밑에 “, 제13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다음 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 – 공포일

이. 제1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앞에 표제를 붙이는 개정 규정, 동조의 개정 규정 및 동조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그리고 다음 조 제2항의 규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날

삼. 다음에 열거하는 개정규정 및 다음 조 제3항, 제4항, 제9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 및 제16항과 부칙 제3조 제3항 –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나. 제1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동법 제12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18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19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20조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동법 제26조 제5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37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개정규정, 동법 제39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개정규정, 동법 제42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55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58조의 7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58조의 8 개정규정, 동법 제58조의 12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58조의 13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58조의 14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동법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제6조 제4항“ 밑에 “제13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동법 제71조 제1호의 개정규정(“자”를 “때.”로 변경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동법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제20조”를 “제2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제2조 중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4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은 전조 제3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이하, 동조 및 다음 조에서 “제3호 시행일”이라고 한다) 전에도 제1조의 규정 (동호 “가”에 열거하는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동조에서 “새로운 특정 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18조 제2항(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19조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55조 제3항 또는 제58조의 7 제2항(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 제정 입안을 위해,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예에 따라, 소비자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조의 규정(전조 제2호에 열거하는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동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실행일 이후에 판매업자로부터 송부가 있었던 상품의 반환 청구에 대해 적용하며, 동일 전에 판매업자로부터 송부가 있었던 상품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 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받는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조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및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19조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제1조의 규정(전조 각호에 열거하는 개정 규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동조에서 “신규 특정 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이 법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조, 제3조의 2 제2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혹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의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동조에서 “구 특정 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조의 2 제2항 혹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6. 신 특정 상거래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제5항 제외), 제12조의 5, 제12조의 6,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와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제12조의 5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 상거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와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7. 신 특정 상거래법 제15조의 4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의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 적용한다.

8. 신 특정 상거래법 제23조 제2항 및 제2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20 2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며,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16조에서 제211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 상거래 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9.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쇄판매거래(다음 항에서 단지 “연쇄판매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10.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9조 제4항 및 제39조의 2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통괄자(이하, 이 항에서 단지 “통괄자”라고 한다)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또는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혹은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규정하는 권유자(이하, 이 항에서 단지 “권유자”라고 한다)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6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하는 행위에 관하여 통괄자에게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권유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또는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권유자에게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및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규정하는 일반연쇄판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단지 “일반연쇄판매업자”라고 한다)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혹은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3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일반 연쇄판매업자에게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며, 통괄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 16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혹은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또는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6조의3 (제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 상거래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하는 행위에 관해 통괄자에게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 3 (제5항은 제외한다)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권유자에게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및 일반연쇄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 2, 제3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혹은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 상거래법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일반연쇄판매업자에게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11. 신규 특정상거래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계약 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권리 판매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12.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47조 제2항 및 제4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43조, 제44조 혹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의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며,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13. 신규 특정상거래법 제5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다음 항에서 단지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14.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7조 제2항 및 제5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이하, 이 항에서 단지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는 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혹은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에 관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 대해 적용하며,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수행하는 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 3(제5항은 제외한다)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 상거래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에 관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15.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4에 규정하는 구매업자(제17항에서 단지 “구매업자”라고 한다)가 받는 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서 적용한다.

16.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변경하여 준용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7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17.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13 제2항과 제58조의 13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매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5, 제58조의 6, 제58조의 7 제1항, 제58조의 8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8조의 9에서 제58조의 11의 2까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규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12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며, 구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5에서 제58조의 11의 2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 12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이들 행위와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내각총리대신은 제3호 시행일 전에도 제2조의 규정(부칙 제1조 제3호 “나”에 열거하는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개정 후의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신 예탁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의 정령 제정 입안을 위해, 신 예탁법 제28조의 규정 예에 따라, 소비자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2조의 규정(부칙 제1조 제3호 “나”에 열거하는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의한 개정 후의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 예탁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되는 신 예탁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에 대해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 예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 상품 또는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이용권의 동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신 예탁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되는 신 예탁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4. 신 예탁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하는 동항에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한 구 예탁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예에 따른다.

5. 신 예탁법 제7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되는 신 예탁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에 대해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체결되거나, 또는 갱신된 구 예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6. 신 예탁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1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은 신 예탁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예탁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신 예탁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권유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예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예탁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구 예탁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예탁 등 거래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예탁법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예탁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예탁법 제4조 제1 항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7. 시행일부터 제3호 시행일 전날까지 사이에 신 예탁법 제28조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중 “제2항, 제3조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 위임)

제5조 전3조에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6조 정부는 부칙 제1조 제3호에 열거하는 규정을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 있어서, 동호 “가”와 “나”에 열거하는 개정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시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 시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정부는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을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 규정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개정)

제7조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의 규정 중 “특정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을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일.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 다 및 제33조의 5 제1항 제2호

이.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98호) 제98조 제5호

삼. 상품투자 관련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66호) 제6조 제2항 제3호

사.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05호) 제70조 제1항 제5호

오.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1호) 제15조 제1호 와

육.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2009년 법률 제48호) 제4조 제1항 제11호 및 제6조 제2항 제4호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제8조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제3중 제91호를 제92호로 하고, 제65호에서 제90호까지 1호씩 내리며, 제64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육십오.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 제32조 (권유 등의 금지 등)의 죄